

■ 업무내용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3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기준

2023.12.12 시행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2. 기술능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야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삭제 <2015.12.15.>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15~20일 이내 소요